

# 지역업체 보호 ‘착한규제’ 없애나

##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로컬푸드’ 추진 사업 정부서 폐지요구 논란

정부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제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와 ‘로컬푸드’ 등 ‘착한 규제’ 폐지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난해 말 15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어 지난 1월 역외지역을 차별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 단체의 경쟁제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각 시도에 6월 말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경쟁 제한적 규제라고 지적한 조례는 로컬푸드 관련 16건, 건설업 관련 110건,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7건 등이다. 이중 논란이 되는 것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와 ‘로컬푸드’다.

도내에는 강원도를 포함해 도내 18개 시군 모두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각 공사에 대해 공구분할과 분할

발주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사의 시공품질에 문제가 없는 한 지역건설사업체와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은 49% 이상, 하도급은 50% 이상으로 규정해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18개 시군도 강원도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최소한의 지역 업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이 지역 농축수산물 보호를 위해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로컬푸드’ 추진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강릉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활용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도 평창 겨울올림픽을 겨냥한 로컬푸드 육성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정부는 해당 조례 등이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제한하고, 타 시·도 기업의 진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공정위의 주문에 대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등 모처럼 맞은 경기 활성화 기회를 규제개선이 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에 뺏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지역균형발전협약체 등과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 강원도, 지역 도로망 확충 '팔 걷어'

강원도가 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 도지사가 정부에 신규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도 일부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근 세종시를 방문, 국토교통부에 동서동해제2영동 고속도로의 내년 말 개통을 위한 잔여사업비 전액 반영과 함께 8개 신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부 계획 포함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16~2020년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최지사는 "현재 건설 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 모두 2016년 완공 예정인데 도내 고속도로 후속사업 계획은 전무하다"면서 "정부의 계획에 도내 8개 노선 모두 우선 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가 건의한 8개 노선은 △춘천 동내~철원 김화 63.0km·2조3688억원 이하 추정 사업비 △원주~세종 90.0km·3조3840억원 △저천~삼척 132.2km·4조6323억원 △스공근~서발 12.0km·4512억원 △포

천~철원 25.3km·9512억원 △속초~간성 15.7km·5903억원 △포항~삼척 180.4km·6조7830억원 △양구~영천 309.5km·5조1000억원 등이다. 도내 정치권 및 지자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새누리당 영동열 이이재 국회의원과 강원 등해·대백·삼척 영월 정선 충북 제천 단양 등 7개 지자체장 및 시군의회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천~삼척 구간과 조기 착공과 낙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이재 의원은 "강원

최지사가, 국토부에 8개 신규고속도로 정부 계획 포함 등 건의 국회의원·지자체, '동서9축제천~삼척 구간' 조기 착공 촉구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은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만 보지 말고 지역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동열 의원은 "정부의 계획인 동서9축 도로망 중 제천~삼척 구간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구간 지자체는 폐교지, 쇠퇴도시와 같은 낙후 지역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1~2020년 정부의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평택~삼척(250.4km)

간 동서고속도로 가운데 평택~안성이 완공된 데 이어 안성~음성, 음성~충주, 충주~제천 구간도 연차적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132.2km인 제천~삼척 구간만 공사와 관련한 세부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실정이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제천~삼척은 숙원사업에 해당한다.

박선규 영월군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 건설 강령 남부권과 중부 내륙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선 제천~삼척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정희훈기자 hoony@

## 평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내달 발주

사업비 절감을 위해 재설계 중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공사가 이르면 내달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된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강릉빙상경기장 클러스터에 들어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재설계(설계변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건축 내용을 사실상 확정했다.

당초 지하 2층, 지상 3층이었던 경기장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건축 연면적도 3만9870㎡에서 3만7455㎡로 줄었다. 관중석은 8000석 그대로 유지했다. 당초 설계에서 금속을 사용할 예정이었던 패널은 샌드위치 패널로 변경해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평면형이었던 경기장 지붕은 곡선형으로 바뀐다.

사업비는 당초 1129억원에서 931억원으로 198억원 줄었다. 그러나 기존 설계비용과 감리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절감액은 1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도는 내달 3일 재설계를 완료한 뒤 조달청을 통해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이후 5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6월 중순께는 착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건설 중인 다른 경기

사후 철거 전제로 재설계 기존보다 120억 절감될 듯



사후 철거를 전제로 재설계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조감도.

장에 비해 재설계 기간을 거치면서 공사기간이 촉박해졌다. 입찰 규정은 무시할 수 없지만 되도록 빨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2017년 2월 예정된 테스트 이벤트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피겨-쇼트, 아이스하키 등 현재 건설 중인 다른 경기장의 공정률이 10~12%인 점을 감안하면 약 20% 정도 늦게 착공되는 셈이다. 도는 돌관작업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지난해 4월 다른 경기장들과 함께 입찰공고하고 개찰 단계까지 갔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후 활용방안을 놓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입찰 취소와 함께 재설계에 들어갔다. 이번 재설계는 대회 개최 후 철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거를 전제로 재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마나 책정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아간 작업까지 시행한다면 일부분 공사비 증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 건설 전문가 상담코너

**Q**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로서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 발주공으로 도급받았던 중에 있습니다. A사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그중 B사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B사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문제를 겪고 있던 B사는 A사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지도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A사는 공사진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A** 이 사안의 경우 우선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B업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명목자가 공동수급체로 되어 있다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역시 공동수급체로 확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하도급계약의 명목자가 B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바, 하도급계약의 명목자가 B업체라고 하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곧바로 B업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테면 공동수급체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할에도 사무처리의 편의상 대표업체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시공의 범위 속에 속하는 공사이지만 대표업체가 다른 구성원과의 협의 없이 후에 정산할 예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도급공사가 실제 공사현장에 속하였는지 여부, 주문서·견적서 등 계약서 외의 다른 관련 서류의 명목자가 공동수급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공사대금의 부대에 공동수급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하수급인과 대표자의 관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만약 하도급계약상의 의무가 B업체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A업체는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B업체의 선급금 지급의무를 대위변제하고, 민법 제480조 혹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거나,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B업체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하도급계약상 의무가 공동수급체에 귀속된다면 A업체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내부적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비율로 B업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변호사  
건설 법률상담 전문위원

제공 : 대한건설협회 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